

의안번호	2217830
의 퇴 인	황희 의원
회 답 일	2025.06.23.
추계번호	25C1654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 등)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		(제5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등의 유지·보수 등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		(제6항)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예약 등에 관한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②학교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1조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⁾

- 이에 각 시·도는 자치법규를 통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료 징수 등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²⁾

* [참고자료] 학교시설 개방 현황

□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신설 또는 확대될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현재 시·도 자치법규는 개별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및 원상복구 의무 등은 각 학교의 내부규정을 따르고 있음
 - 참고로, 서울시교육청은 주말 학교 개방 시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스쿨매니저를 파견하고 있으며, 학교시설 배상보험을 지원하고 있음³⁾
- 한편, 각 시·도교육청은 이미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,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임
 - 강원특별자치도, 경기도, 충청북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·도교육청은 이미 학교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
 - 참고로, 경기도, 충청북도교육청은 '25년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고 발생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이 신설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사업의 구체사항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고, 시·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사업비 책정이 상이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

제11조(학교시설 등의 이용)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공립·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 등

3) 서울시교육청,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 (2025.1), 72p

- ☐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Ⅳ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학교시설 개방 현황

(단위 : 개교)

학교급	개방여부	체육장	체육관	강당	일반·교과 교실	특별 교실	시청각실
초	무	1,014	932	807	3,512	3,858	1,398
	유	5,111	3,458	1,306	2,660	2,235	796
	시설없음	59	1,794	4,071	12	91	3,990
중	무	476	464	405	1450	1939	725
	유	2,328	1,610	566	1,667	1,151	548
	시설없음	373	1,103	2,206	60	87	1,904
고	무	506	605	456	1,194	1,429	800
	유	1,775	1,180	487	1,141	893	534
	시설없음	58	554	1,396	4	17	1,005
특수	무	69	44	35	139	135	66
	유	93	62	52	57	54	37
	시설없음	34	90	109	0	7	93
각종 학교	무	25	17	24	47	44	13
	유	30	13	10	27	20	10
	시설없음	25	50	46	6	16	57

주: 2025년 5월 기준 자료임

자료: 교육부